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의무 미준수
벌칙 과태료 전환〉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52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의무 미준수 벌칙 과태료 전환	3
2. 부 칙	13
IV. 입법의 재정영향	15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1.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2. 제안일: 2025. 12. 30.

3. 회부일: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및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하천의 일

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및 제27조제1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의무 미준수 벌칙을 형벌규정에서 과태료로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및 제27조제1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벌칙) ① (생략)	제2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삭제>

위하여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하고(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³⁾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법제도 중 어도에 대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인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회유성(回遊性) 어류 : 연어·은어·황어·웅어·뱀장어 등(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027))

3)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한 현황을 보면, 이는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회유성어류(연어·은어·황어·옹어·뱀장어 등)의 이동 통로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인 보(潛) 33,904개 중 어도 설치는 5,517개로 설치율은 16.3%에 불과하며,

< 전국 하천의 보 및 어도 설치현황 >

구분	2010년(A)	2016년(B)	2021년(C)	증감(C-B)
보(개)	34,012	33,852	33,904	52개
어도(개)	5,081	5,251	5,517	266개
설치율(%)	14.9	15.5	16.3	0.8%

* 자료 :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027)

하구(463개소: 닫힌하구 228, 열린하구 235) 중 인공구조물(하굿둑)이 있어 어도 설치가 필수적인 닫힌하구 228개소 중 갑문식 어도 11개소, 계단식 어도 4개소로 소수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를 통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 부과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제한 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

를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5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행정상 명령 불이행 등 18개 유형의 경미한 의무위반⁴⁾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 개정안은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유성 어류 등의 이동통로 개방 또는 어도 설치 불이행 등을 정하고 있는 제1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전환은 현행법의 다른 행위와 비교를 통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의 유사 행위 및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18조⁵⁾에 따른 유어질서(遊漁秩序)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어도 사후관리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조치

4) 통지·표시·조사·검사 등 「법령입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참고 1] 참조)

5)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⁶⁾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25조제2항⁷⁾은 대부분의 사항이 공익적 목적을 위한 내수면어업 면허 제한·정지 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내수면어업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라는 법의 핵심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관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실체적 위반행위인 반면,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정상 명령 미이행 사항은 행정청의 관

6) 「내수면어업법」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내수면어업법」

제2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삭제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거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리·감독 절차에 대한 비협조로서 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기보다는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반행위를 다른 각 호에 따른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한편, 안 제25조제2항제6호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의 “제16조제1항8)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 위반”과 같이 행정형벌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실질적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제3호의 어업 제한·정지 처분과 달리 제6호는 어도 확보를 위한 계도 목적의 제한 조치의 성격이므로, 이를 위반한 벌칙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도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임.

-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최근 5년간 법

8) 「내수면어업법」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제25조제2항제5호·제6호 벌칙 적용 건수가 전무한 점을 고려하면, 1천만원의 벌금형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제재의 억지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행정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⁹⁾ 다만, 벌칙의 존재로 인해 범위반이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태료 전환 후 제재 완화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 점검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2018.8.30., 2017헌바368)는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결정의 반대의견은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9)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 부과만으로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에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 상한액의 설정은 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사회적 영향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로, 종전 벌금형 상한 1천만원을 1천만원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유지 및 현행법상 과태료 규정의 행위 위반과 비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과태료 규정(500만원 이하)은 ‘법령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후’ 사후관리 미비로 어도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추가 설치를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나,

개정안은 행정상 작위의무 부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어도 미설치 또는 이동통로를 개방하지 않거나 시·도지사등의 어업 제한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후적 행위보다 고의성 또는 수산생물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고 판단됨.

-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함.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계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⁰⁾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¹⁾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²⁾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0)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2)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³⁾.

문 의 처
02)6788-5419

1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법령집안심사기준」 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①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 ②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영업 개시신고, 변경신고, 승계신고, 휴·폐업신고, 행위신고)
- ③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 위반 등)
- ④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⑤ (조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설명·보고 명령(요구) 불응, 출석이나 진술·답변 요구 불응)
- ⑥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유사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⑧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보수교육, 연수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 ⑨ (강제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⑩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 ⑫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⑬ (인력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 ⑭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 ⑮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 ⑯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⑰ (토지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⑱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겸직금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과태료) ① 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⑤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에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5.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8. 그 밖에 해양생태계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30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4. 제15조제1항·제4항·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하거나 쥐·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